

제165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조례안상정

(조례 4건)

거창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0 ~ 8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0 ~ 9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0 ~ 10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0 ~ 11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8
----------	----------

제출연월일	2010. 2.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공립어린이집(소만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종사자의 임면사항 및 임용연령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또는 삭제하는 한편, 어린이집 이용대상과 보육료,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 보육정책위원회의 명칭 및 종사자의 휴가·휴직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 「영유아보육법」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나. 종전 본문에서 규정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신규로 설치한 소만어린이집을 추가하여 별표로 규정함(안 제2조, 별표 신설).

- 명칭 : 소만어린이집(2008. 3. 6일자 인가)
- 위치 : 거창읍 대동리 소만주공아파트 104동 지상1층

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 보육료의 결정, 보육정책위원회의 명칭 등을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라.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2조).

- 현행 : 어린이집의 모든 종사자를 군수가 임면
- 변경 :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

마.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용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 시설장(40세이상 55세이하), 기타종사자(20세이상 32세이하)의 임용연령 삭제

바.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가 및 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지방공무원법」 외에 특별히 구분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16조, 제17조, 별표 1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4조, 제29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 6. ~ 2010. 1. 2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등록규제 폐지 1건(제13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를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위원회”를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어린이집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를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기타종사자”를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휴가)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가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휴직)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직 사유와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5인”을 “5명”으로, “위원회”를 “위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기타종사자”를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td> <td>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td> <td></td> </tr> <tr> <td>상동어린이집</td> <td>거창읍 상림리 274-1번지</td> <td></td> </tr> <tr> <td>중동어린이집</td> <td>거창읍 대평리 938-4번지</td> <td></td> </tr> <tr> <td>동동어린이집</td> <td>거창읍 대동리 52-1번지</td> <td></td> </tr> <tr> <td>위천어린이집</td> <td>위천면 장기리 486-9번지</td> <td></td> </tr> </tbody> </table> <p>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p>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거창군 보육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이하의 저학년 아동 	명칭	주소	비고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		상동어린이집	거창읍 상림리 274-1번지		중동어린이집	거창읍 대평리 938-4번지		동동어린이집	거창읍 대동리 52-1번지		위천어린이집	위천면 장기리 486-9번지		<p>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p> <p>제2조(명칭과 위치)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p> <p>제3조(업무) -----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p>제4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p>
명칭	주소	비고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																		
상동어린이집	거창읍 상림리 274-1번지																		
중동어린이집	거창읍 대평리 938-4번지																		
동동어린이집	거창읍 대동리 52-1번지																		
위천어린이집	위천면 장기리 486-9번지																		

현행	개정안
<p>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u>의한</u> 수급자의 자녀</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자녀</p> <p>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매년)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p> <p><신 설></p> <p><신 설></p> <p>4. 맞벌이 가정의 자녀</p> <p>5. 일반가정 자녀</p> <p>② (생략)</p> <p>제6조(보육료) <u>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의 급식비, 시설의 관리,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 보육단가로 한다.</u></p>	<p>제5조(입소순위) ① ----- <u>각 호</u>-----.</p> <p>1. ----- <u>따른</u> -----</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p> <p>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p> <p>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보육료) <u>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7조(위탁운영) ① (생략)</p> <p>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u>의거</u> 군수에게 위탁관리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u>의하여</u>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u>보육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제7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따라</u> ----- ----- ----- <u>그 밖에</u> ----- ----- <u>따라</u> ----- -----.</p> <p>③ ----- ----- <u>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u>-----.</p>
<p>④ (생략)</p> <p>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행위의 금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1조(계약의 해제)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2조(종사자 임면) <u>어린이집 시설장</u> 및 기타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단서 생략)</p>	<p>제12조(종사자 임면) <u>어린이집 시설장</u>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종사자의 자격) ① (생략) ② 어린이집 종사자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 : 40세이상 55세이하 2. 기타종사자 : 20세 이상 32세 이하 	<p>제13조(종사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기타종사자 : 57세 <p>② (생략)</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u> : --- <p>② (생략)</p>																		
<p>제16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p>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6조(휴가)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가 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75 1142 774 1568"> <thead> <tr> <th>근속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월 이상 6월 미만</td> <td>4일</td> </tr> <tr> <td>6월 이상 1년 미만</td> <td>7일</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10일</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3일</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16일</td> </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 <td>19일</td> </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 <td>22일</td> </tr> <tr> <td>6년 이상</td> <td>23일</td> </tr> </tbody> </table>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p>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년 2월 범위 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을 허가한다.</p> <p>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7조(휴직) 임면권자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휴직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나.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육아코자 출산 특별휴가를 원치 않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다.</p> <p>2.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p>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p> <p>나.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다. 만 1세 미만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3. 휴직의 효력은 휴직 중인 종사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4.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p>	<p>제17조(휴직) 어린이집 종사자의 휴직 사유와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8조(징계위원회) ① (생략)</p> <p>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초등장학사로 구성한다.</p>	<p>제18조(징계위원회) ① (생략)</p> <p>② ----- 1명----- 5명 --- 위원----- ----- ----- -----.</p>
<p>제19조(징계권자) (본문 생략)</p> <p>1. (생략)</p> <p>2. 기타종사자 : 임면권자</p>	<p>제19조(징계권자) (본문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u> : -----</p>

[별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2번지
상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74-1번지
중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38-4번지
동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2-1번지
위천어린이집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86-9번지
소만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만주공아파트 104동 지상1층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9
----------	----------

제출연월일	2010. 2.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2010.1.4.)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촉진지구 외에 개별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순서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며,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 간사 : 지역경제담당주사 →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
- 위촉위원의 임기 : 2년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13조).

-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 월 100만원까지 지원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14조).

- 20명 초과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지원 → 월 100만원까지 지원

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입지지원, 고용·교육훈련·시설보조금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19조).

-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채용 상시고용규모 20명 이상 →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마. 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본점의 관내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을 변경함
(안 제20조).

○ 본점 이전 기준을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내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별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3 신설).

○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개별 입주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 지원기준(제19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0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및 「건축법」 제2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6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수요 발생시 필요 예산 편성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12. 29. ~ 2010. 1. 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규정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조업외”를 “제조업 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을 “상시고용인원을 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상시 고용인원”을 “상시고용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장용지 안에서”를 “공장용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나목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계산”을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도외”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투자유치위원회”를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지역경제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을 “출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민원처리의 특례”를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상시고용규모가”를 “상시고용인원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영위”를 각각 “경영”으로 한다.

제10조 중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는”을 “경우”로, “분양가의 차액만을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분양가의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 50만원”을 “월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당”을 “기업당 지원총액이”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당”을 “초과인원 1명당”으로,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를 “월 100만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 기업등록”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를 “외국인투자기업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조제7항”을 “영 제2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군수는”을 “군수가”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를 “도 외 소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3만3천 제곱미터”를 “3만3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외”를 “도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 지구 내에서”를 “지정 지구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군수는 제2항에 따라”로, “기업에게”를 “기업에 대하여”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 후단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기업에게”를 “기업에 대하여”로 한다.

- ①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외에”를 “도 외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일 상시고용 규모가”를 각각 “상시고용인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백억”을 “5백억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분담자금”을 “분담경비”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24조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포상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본문 생략)</p> <p>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p> <p>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p> <p>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 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p> <p>4.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p> <p>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p> <p>6.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군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7.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 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본문 현행과 같음)</p> <p>1. -----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p> <p>2. -----이란 -----.</p> <p>3. -----이란 -----.</p> <p>4. -----란 -----.</p> <p>5.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p> <p>6. -----이란 ----- 제조업 외-----.</p> <p>7. -----이란 ----- 상시고용인원을 채용-----.</p>

현행	개정안
<p>나. <u>동일한</u>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u>계산</u>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p> <p>다. (생략)</p> <p>14. "<u>이전보조금</u>"이라 함은 <u>도외</u>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15. "<u>상시고용인원</u>"이라 함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u>자로서</u>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p> <p>16. "<u>기반시설</u>"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나. <u>같은</u> ----- <u>회계처리</u> -----</p> <p>다. (현행과 같음)</p> <p>14. -----<u>이란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외</u>-----</p> <p>15. -----<u>이란</u> -----</p> <p>----- <u>사람으로서</u> -----</p> <p>16. -----<u>이란</u> -----</p>
<p><u>제3조(투자유치위원회)</u> ① (생략)</p> <p>⑤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u><신설></u></p> <p>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지역경제담당주사</u>가 된다.</p> <p>⑥ (생략)</p>	<p><u>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u>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⑥ ----- <u>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u>-----</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할 -----</p> <p>-----</p> <p>-----</p> <p>-----</p> <p>② -----</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생략)</p>	<p>제7조(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p> <p>① ~ ② (생략)</p> <p>③ (본문 생략)</p> <p>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u>영위</u>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u>상시고용규모가</u> 30명 이상인 경우</p> <p>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u>영위</u>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p> <p>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u>영위</u>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p> <p>④ (생략)</p> <p>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u>동등한</u>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 ----- ----- <u>경영</u> ----- ----- <u>상시고용인원이</u> -----</p> <p>2. ----- ----- ----- ----- <u>경영</u> ----- ----- -----</p> <p>3. ----- ----- ----- <u>경영</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금융지원) -----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u>같은</u> ----- -----.</p>

현행	개정안
<p>제12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u>경우는</u>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u>분양가의 차액만을 지원</u> 하되 <u>제조업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u></p> <p>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u>영위</u>하여야 한다.</p>	<p>제12조(입지지원) ① ----- ----- <u>범위에서</u> ----- ----- -----.</p> <p>② ----- <u>경우</u> ----- ----- ----- ----- <u>분양가의 차액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u>----- -----</p> <p>③ ----- ----- ----- ----- ----- <u>경영</u>----- -----.</p>
<p>제13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u>월 50만원</u>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고용보조금) ① ----- ----- ----- <u>범위에서</u> ----- ----- -----.</p> <p>② ----- ----- ----- ----- ----- <u>월 100만원</u>----- -----.</p>

현행	개정안
<p>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u>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u></p>	<p>③ ----- ----- ----- <u>기업당 지원총액이 -----</u> ----- <u>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u></p>
<p>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u>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u>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 내에서 <u>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u> 지원할 수 있다.</p>	<p>② ----- ----- ----- ----- <u>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u> -----.</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u>외국인 기업등록</u>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 <u>외국인 투자기업 등록</u> ----- ----- ----- -----.</p>
<p>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u>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u>」 제1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u>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u>,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p>	<p>④ ----- 「<u>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u>」 제2조 ----- ----- <u>공공직업훈련시설</u> ----- -----</p>

현행	개정안
<p>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p>	<p>----- ----- ----- ----- -----.</p>
<p>제15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u>외국기업의 투자 유치</u>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u>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u>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u>범위 안에서</u>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u>다만,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시작일(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u></p>	<p>제15조(시설보조금) ① --- <u>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u>----- ----- <u>외국인 투자기업에</u> --- <u>범위에서</u> ----- -----.</p> <p>② ----- ----- ----- ----- <u>범위에서</u> ----- ----- . <단서 삭제></p>
<p>제15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본문 생략)</p> <p>1. 「<u>초·중등교육법</u>」 제6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내</p>	<p>제15조의2(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 ----- ----- <u>범위에서</u> ----- -----.</p> <p>② (본문 현행과 같음)</p> <p>1. 「<u>초·중등교육법</u>」 제60조의2에 -- ----- -----</p>

현행	개정안
<p>2. 영 제2조제7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u>군수는</u>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u>범위 안에서</u> 2억원 내</p> <p>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p> <p>① 군수는 <u>경상남도(이하 "도" 라한다)의</u>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u>산업단지</u>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u>3만 3천 제곱미터</u>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본문 생략)</p> <p>1. <u>도외</u>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p> <p>2. 도내·외 기업이 <u>지정 지구 내에서</u>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p>	<p>2. 영 제2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u>의 규정</u>----- <u>군수가</u> -----</p> <p>-----</p> <p>----- <u>범위</u></p> <p><u>에서</u> -----</p> <p>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p> <p>① ----- <u>도 외 소재</u> -----</p> <p>-----</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일반산업단지</u></p> <p>-----</p> <p>----- <u>3만</u></p> <p><u>3천제곱미터</u> -----.</p> <p>③ (본문 현행과 같음)</p> <p>1. <u>도 외</u> -----</p> <p>-----</p> <p>2. ----- <u>지정지구에서</u></p> <p>-----</p>

현행	개정안
<p>제20조(이전보조금) ① <u>도외에</u>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u>범위 안에서</u>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③ <u>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u>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u><단서 신설></u></p> <p>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이전보조금) ① <u>도 외에</u> ----- ----- ----- ----- <u>범위에서</u> ----- -----.</p> <p>② ----- ----- ----- ----- <u>범위에서</u> ----- -----.</p> <p>③ <u>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u>----- ----- ----- ----- -----.</p> <p><u>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p> <p>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u>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u>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본문 생략)</p> <p>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 달러 이상이거나 <u>1일 상시고용 규모가</u> 1,500명 이상인 경우</p> <p>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u>5백억</u> 이상이거나 <u>1일 상시고용 규모가</u> 300명 이상인 경우</p> <p>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p> <p>① ~ ② (생략)</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u>분담자금</u>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3(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p> <p>① ----- ----- ----- <u>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u> ----- ----- -----.</p> <p>②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 <u>상시고용인원이</u> ----- -----</p> <p>2. ----- <u>5백억원</u> ----- ----- <u>상시고용인원이</u> ----- -----</p> <p>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분담경비</u> ----- ----- -----.</p>

현행	개정안
<p>제23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u></p> <p>1. (생략) 2. <u>허위</u>,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 7. (생략)</p>	<p>제23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 ----- ----- <u>반환하게 하여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 2. <u>거짓이나</u> ----- ----- 3. ~ 7. (현행과 같음)</p>
<p>제24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u>,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p>	<p>제24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 -----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 <u>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u> -----.</p>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10
----------	-----------

제출연월일	2010. 2.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기업사랑 환경조성을 위해 시상하는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변경함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제3항).

○ 최고경영인상

- 종전 :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
- 변경 :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

○ 최고근로인상

- 종전 :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
- 변경 :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

나. 종전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련 개별조례를 통합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다.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신설·확대함
(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기준을 마련함
-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및 법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통합 디자인 개발·제작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함
-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창업성공을 제고를 위한 임대료 지원 기준을 마련함

라.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시책 중 경상남도과 동일한 시책의 경우 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을 일치시킴으로써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5조

나. 예산조치 : 2010년 본예산 확보(63,5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12. 29. ~ 2010. 1. 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을 “연 100분의 6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을 “지원받으려는”으로 한다.

-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을 “관내 기업”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시장개척 지원)**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을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혁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이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중소기업”을 “관내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파워 브랜드 개발로 매출 극대화와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및 법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창업보육센터 지원) ① 군수는 창업보육센터 내 보육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한정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을 “관내 기업”으로 한다.

제5조,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유관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사랑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 ----- ----- ----- ----- ---- <u>범위에서</u> -----.</p>
<p>제 6조(최고경영인상) ① ~ ② (생 략) ③ 대상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 ② (생 략) ③ 대상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8조(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신청 및 정산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16조의2(시장개척 지원)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혁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 범위 에서 ----- ----- ----- -----.</p>

현행	개정안
<p>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수는 <u>중소기업</u>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본문 생략)</p> <p>1. ~ 2. (생략)</p> <p>③ (본문 생략)</p> <p>1. 상시근로자가 <u>10명 이상</u>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p> <p>2. ~ 3. (생략)</p>	<p>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 <u>관내 기업</u>----- ----- ----- ----- -----.</p> <p>②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u>5명 이상</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19조의2(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지원)</p> <p>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도 통하는 파워 브랜드 개발로 매출 극대화와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및 법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u>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u>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을 <u>거창군근로자자녀장학생</u> (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9조의3(창업보육센터 지원) ① 군수는 창업보육센터 내 보육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업체의 임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한정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 ----- ----- 관내 기업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11
----------	-----------

제출연월일	2010. 2.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07.12.21)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과 기금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제11조).

-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함
-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함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둠

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위원회의 심의기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됨
-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옥외광고 관련 분야 종사자 중 해당 분야 대표자,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함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라.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관계규정의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나 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4조, 제142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수요 발생시 필요 예산 편성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 14. ~ 2010. 2.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균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